

2026 이공분야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

박사후국내연수 신규과제 신청요강

- ▶ 2026년도 이공분야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운영하는 IRIS*(<https://www.iris.go.kr>)를 통해 과제신청, 평가 및 관리업무를 진행합니다.
- * IRIS(Integrated R&D Information System): 각 부처 및 전문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 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등 세부 내용은 신청요강 및 별첨(매뉴얼) 자료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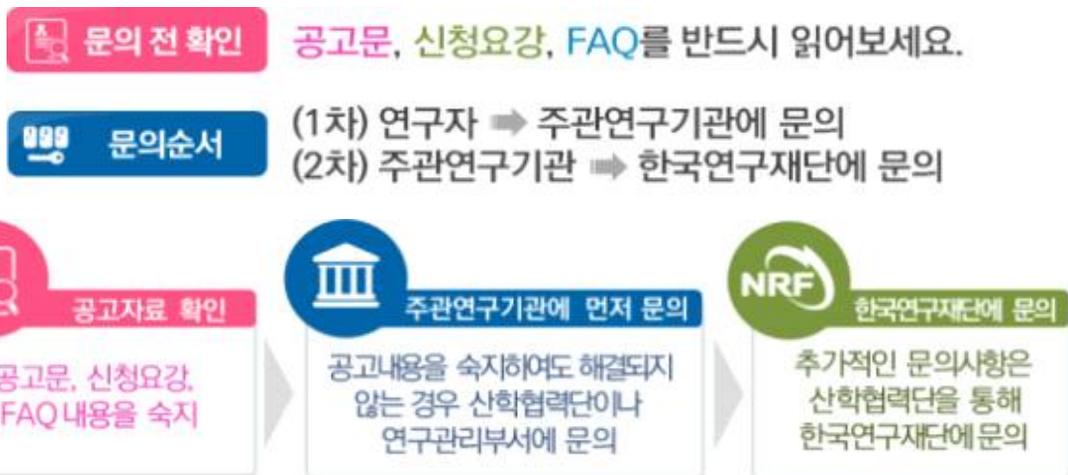
2026. 2.

교육부 학술연구정책과
한국연구재단 이공학술지원팀

문의절차 및 문의처

□ 문의 절차

“문의전화 폭주로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자료(공고문* · 신청요강 · FAQ) 확인 후
주관연구기관을 통하여 질의 요망”



□ 신청 및 접수 시스템 관련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문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관련
 - IRIS 콜센터 ☎ 1877-2041, ☎ 042-862-1500
 - IRIS 홈페이지 > R&D업무포털 > R&D고객센터 > R&D신문고 > IRIS시스템문의
- ※ IRIS시스템 장애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 불가합니다.

□ 사업 및 평가 관련 : 한국연구재단 문의

- 사업 관련: 사업 내용, 지원자격 등
 - 한국연구재단 이공학술지원팀 ☎ (042) 869-6619, 6622, 6068
- 평가 관련: 선정평가 절차 · 방법 · 결과 등
 -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 학문단 ☎ (042) 869-내선번호 4자리

| 학문단 | 자연과학단 | 생명과학단 | 의약학단 | 공학단 | ICT · 융합연구단 |
|-------------|-------|-------|------|------|-------------|
| 박사후 국내연수 | 6559 | 6533 | 6055 | 6542 | 6575 |

신규과제 신청 시 필수 확인 사항

- ① 2026년 이공분야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박사후국내연수) 신규과제 신청 기간 및 절차
- 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 분 | 내 용 |
|--------------|---|
| 연구자 신청 | 2026.4.7(화) 9:00:00 ~ 2026.4.14(화) 14:00:00 |
|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 | 2026.4.7(화) 9:00:00 ~ 2026.4.16(목) 14:00:00 |
| 신청 절차 | 연구자 접수 ▷ 주관연구기관 승인 ▷ 신청 완료 |

- ※ 연구책임자는 신청마감일(2026.4.14. 14:00:00)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신청 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규과제 신청이 최종 완료됨
- ※ 신청마감일 1~2일 전까지 신청완료를 권장하며 신청 기간 내 미접수시 별도 구제 불가

- ② ‘온라인신청매뉴얼’은 신청 1주일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될 예정이므로,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③ 2026년도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운영하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을 통해 **과제 신청, 평가 및 관리업무를 진행**합니다.

- ④ 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반드시 연구책임자 접수기간 시작 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

① (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내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① 및 ②: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연구자 포함), ③: 연구책임자만 필수

② (주관연구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가 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

※ 세부내용은 [별첨(매뉴얼)1-1](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KISTEP IRIS운영단)) 및 [별첨(매뉴얼)1-2](IRIS 회원가입(연구자 전환)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 참조

▶ IRIS 문의처: **IRIS 콜센터(1877-2041, 042-862-1500)** 또는

IRIS 홈페이지 > R&D업무포털 > R&D고객센터 > R&D신문고 > IRIS시스템문의

I 사업 개요

1 지원근거 및 사업목적

□ 지원근거

- 「학술진흥법」 제5조(학술지원사업의 추진 등)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 사업목적

- 박사학위 취득 연구자에게 연구기관에서 연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연구 활동의 지속성 유지 및 연구의 질적 향상 유도

2 지원 내용 및 선정 규모

| 구분 | 주요내용 |
|----------------|---|
| 연수기관 |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국내 대학교, 국·공립 연구기관 |
| 연구기간 | 1~3년(최소 3개월 의무수행 必) |
| 지원분야 | 이공계 과학기술 전 분야 |
| 연구비 (간접비포함) | 60백만원/연(인건비 45백만원 이상 계상 권고) ※ 간접비 비율 5% 적용 |
| 선정과제수 | 150개 과제 내외 |
| 연수개시일 | 2026년 9월 1일 |

※ 지역대학(DGIST, GIST, KAIST, POSTECH, UNIST는 지역대학에서 제외)에 전체 선정과제수의 50% 이상 배분하되, 지역대학과 수도권 연구기관의 선정률 차이가 25%p 이내가 되도록 과제수 조정 가능
 ※ 회계연도 일치에 따른 연구비 및 연구기간

| 지원기간 | 연구비(백만원) | | | | 연구기간 | | | |
|------|----------|------|------|------|---------------------------|----------------------------|----------------------------|---------------------------|
| | '26년 | '27년 | '28년 | '29년 | '26년 | '27년 | '28년 | '29년 |
| 1년 | 30 | 30 | - | - | '26.9.1~'27.2.28 (6개월) | '27.3.1~'27.8.31 (6개월) | - | - |
| 2년 | 30 | 60 | 30 | - | '26.9.1~'27.2.28 (6개월) | '27.3.1~'28.2.29 (12개월) | '28.3.1~'28.8.31 (6개월) | - |
| 3년 | 30 | 60 | 60 | 30 | '26.9.1~'27.2.28 (6개월) | '27.3.1~'28.2.29 (12개월) | '28.3.1~'29.2.28 (12개월) | '29.3.1~'29.8.31 (6개월) |

II 지원자격 및 제한사항

1 신청 및 수행자격

연구비 중앙관리가 가능한 국내기관(주관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자

- 국내·외 대학에서 '21.9.1 이후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23.9.1 이후 박사학위 취득자 우대
 - 연수 개시일 이전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 신청 가능
 - 연수 전념을 위해 취업(사업)자는 연수 개시 전 내 퇴직(폐업) 필수
 - 병역·출산·육아로 인한 휴직 기간은 신청자격 기간(박사학위 취득 후 5년)에서 제외

연수기관 및 연수지도교수

| 구분 | 주요내용 |
|--------|---|
| 연수기관 |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국내 대학교, 국·공립 연구기관 |
| 주관연구기관 | 연수기관과 동일하며 연구비 중앙관리가 가능한 국내기관 |
| 연수지도교수 | 연수기간 동안 연수기관(주관연구기관)에서의 소속과 신분이 보장된 자로 연수 지도가 가능한 자 |

* 주관연구기관(연수기관)과 연수 수행 및 연수비 지급·관리 등에 관한 사항 사전 확정 필수

2 신청 및 수행 제한 사항

※ 연구책임자의 위반사항 발견 시 사전검토에서 과제 탈락 처리 또는 과제 중단 가능

【정부R&D 공통사항】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연구자는 참여제한 기간이 연구책임자 연구계획서 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종료되는 경우만 신청 가능
- 연구개시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연구자는 과제 선정 제외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제한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 및 예외 관련 주요내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인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한다)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6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4개로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4. 2. 6.>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2. 28., 2022. 12. 6., 2024. 2. 6.>

1.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 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제5조제1호·제2호의 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4의2.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5. 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가. 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신청 및 수행 제한 사항】

- (기본 원칙) 교육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개인단위 기초연구사업*은 연구책임자로 1개 과제만 수행 가능

* 교육부 · 과기정통부 개인단위 기초연구사업

- ▶ 학문후속세대지원(석사과정생, 박사과정생, 박사후국내연수, 박사후국외연수, Post-Doc. 성장형 연구지원), 학술연구혁신지원(기본연구B(포용형), 보호연구, 미래도전연구지원, 글로벌R&D지원, 창의도전연구기반, 지역대학우수과학자, 학제간융합연구), 이공학개인지초(기본연구), 리더연구(유형B(Top-tier), 유형A), 핵심연구(유형C, 유형B, 유형A, 도약형, 한우물파기 기초연구, 글로벌 매칭형, 도전형, 전략형, 기본연구B, 기본연구A), 신진연구(유형B, 유형A, 신진연구자인프라지원), 세종과학펠로우십(국내, 국외, 복귀·유치)

※ 1인 1과제 적용 제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글로벌매칭형, 핵심연구(도전형), 신진연구자 인프라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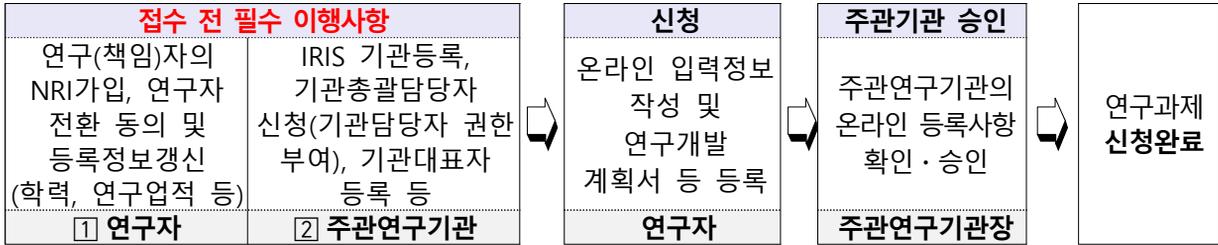
* 핵심연구(도전형)의 경우 '26년 교육부 개인기초연구사업과 동시 신청 불가

- (신규 신청제한) 2026년도 교육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개인단위 기초연구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는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 단, 기 신청한 사업의 선정결과가 확정되어 미선정된 경우에는 신청가능
- (기존연구 수행자 신청 제한) 교육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개인단위 기초연구사업을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는 2026년도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개인연구사업의 연구책임자로 신청 불가
 - 단, 수행 중인 과제가 신규과제 연구개시일 전일(2026.8.31.)까지 최종 종료(연차 및 단계 종료 아님)될 경우 신청 가능
- 연수개시일 기준 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자는 박사후국내연수사업 신청 불가
- 박사후국내연수사업 기 수혜자는 신청 불가
 - (예시) 2022년 박사후국내연수 수혜자는 2026년 박사후국내연수 신규 과제 신청 불가
- 연구기간과 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자) 기간 중복 시 신청 불가

III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www.iris.go.kr)**에 접속/로그인
→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등록 → 주관연구기관 확인 및 승인



- ※ 접수 전 소속기관의 연구관리 담당자에게 주관연구기관 승인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
-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사용에 따라 기존 한국연구자정보(KRI) 내 등록된 연구자 정보를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https://nri.iris.go.kr>)으로 이관 필수(별첨 매뉴얼 1-2. IRIS 회원가입(연구자 전환) 및 연구자정보 등록매뉴얼 참고)

□ 접수 시 유의사항

- 연구책임자 신청기간 내에 연구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 입력사항 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 관련 파일 업로드를 완료하고 [최종확인] 후 오류가 없는 상태에서 [제출] 버튼을 클릭**해야만 신청이 유효함
 - ※ 제출완료 후 수정사항 발생 시, 연구책임자가 ‘제출회수’ 버튼을 통해 관련 내용을 수정할 수 있으며 반드시 연구책임자 접수기간 내에 다시 [최종확인] 후 오류가 없는 상태에서 [제출] 버튼을 최종적으로 눌러야 함
- 주관기관 승인기간 내에 **“주관기관 승인” 까지 모두 완료되어야 최종 접수과제로 인정함**
- 주관연구기관 승인은 소속기관 담당자가 처리하며, 별도 공문 제출 불필요
 - ※ 연구책임자는 주관연구기관의 승인 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소속기관에 문의)
- 마감시간 이후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이 자동 차단되어 신청 불가
- 접수 마감시간 전까지 반드시 **접수가 완료([제출]버튼 클릭)**되어야 함
- 연구개발계획서 오류 발생 시 별도의 구제 방법이 없으므로 신청 후 원본 다운로드, PDF 변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필수 확인
- 접수 마감 이후 접수 취소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과제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 이후 선정 포기 신청

2 신청 기간 및 제출사항

□ 신청 기간

| 구 분 | 내 용 |
|----------------|---|
| 연구책임자 신청 및 접수 | 2026.4.7(화) 9:00:00 ~ 2026.4.14(화) 14:00:00 |
| 주관연구기관 검토 및 승인 | 2026.4.7(화) 9:00:00 ~ 2026.4.16(목) 14:00:00 |
| 신청 절차 | 연구자 신청 ▷ 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 ▷ 신청 완료 |

<신청 관련 주의사항>

- ▶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자 신청 마감시각 전까지 반드시 “제출” 처리 하여야 함.
- ▶ ② 주관기관 승인 기간 내에 “주관기관 승인” 까지 모두 완료되어야 최종 접수과제로 인정
- 따라서, 신청자는 주관기관 승인 여부를 최종 확인 바람(주관기관 문의)
- ▶ 신청자와 주관연구기관은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예상되는 신청 폭주를 감안하여 사전(접수 마감일 1일전 등)에 신청 및 승인절차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람
- 해당 기간 내에 신청 및 승인 완료되지 않을 경우, 별도 구제 절차는 없음

□ 제출사항

- (1단계 : 온라인 입력) 기본정보, 과제요약정보,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 정보, 연구비 내역, 주요연구수행실적(수행완료 과제, 수행(신청) 중 과제) 등
- (2단계 : 제출서류 업로드)
- 연구계획서 분량 초과 시 초과 분량에 대한 평가 미실시 등 평가 불이익 가능/표지·참고문헌·대표적 연구실적 요약문 및 증빙자료는 분량에서 제외

| 제출서류 목록 | 비고 |
|---------------------------|--|
| ① 연구개발(연수)계획서(5페이지 이내) | - 대표연구실적 요약문 및 증빙자료(3건 이내) ※ 논문, 특허, 기타실적을 합하여 연구책임자 3개 이내로 작성 ※ 각 실적별로 요약문은 1쪽 이내로 기술 후 증빙자료 첨부 - 연수지도교수 확인서 |
| ②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등 |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 서약서 포함 |
| ③ 박사학위 취득(예정)증명서 | - 취득일자 포함된 증명서 ※ 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예정자는 확인서 양식 제출 |
| ④ (해당 시) 육아휴직 증명서, 병적증명서 | - 병역·휴직기간이 명시된 기관발급서류 제출 ※ 신청자격 기간(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내) 산정 시 병역 및 육아휴직 기간 제외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함 |

※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내 대표연구실적 요약문 및 증빙자료, 연수지도교수 확인서를 포함하여 제출(대표적 연구실적 요약문 및 증빙자료, 연수지도교수 확인서는 페이지 분량 제한에 미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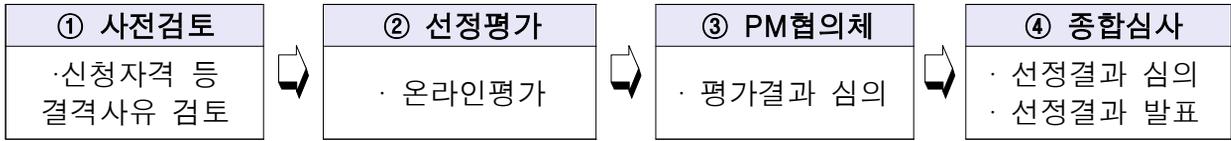
※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의 경우 선정 후 최종 학위 취득 여부 확인 예정

※ 대표연구실적 작성 최대 건수를 초과할 경우, 첨부파일 내 작성 순서대로 3개만 인정됨

※ 반드시 제공된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하며, 각 제출서류별 제시된 조건을 준수하여 작성함

IV 선정절차 및 평가사항

1 평가절차 및 방법



2 평가항목 및 내용

| 평가 항목 | 평가 내용 |
|--------------------------------|---|
| 연구자 역량 (25) | - 연구자의 전공, 경력이 해당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데 적합한가? |
| 연구내용의 창의성 및 타당성 (35) | - 연구 주제가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가? - 연구 방법이 독창적인가? - 연구 과제의 내용과 연구 수행 계획이 적절한가? |
| 연수의 필요성 및 향후 기대효과 (20) | - 연수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이 본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가? - 본 연수경험이 연수자의 연구자로서의 발전 가능성에 미칠 효과가 클 것인가? |
| 연수기관 및 연수 지도교수의 적정성 (20) | - 연수기관 및 연수지도교수가 연구를 수행하기에 적합하고 관련 분야 연구수준이 우수한가? - 연수기관 및 연수지도교수의 지원 의지 및 연구원 활용·처우 계획은 합리적인가? - 연수기관 또는 연수지도교수가 박사학위 취득기관 또는 박사학위 지도교수인 경우, 그 사유가 타당하고 합리적인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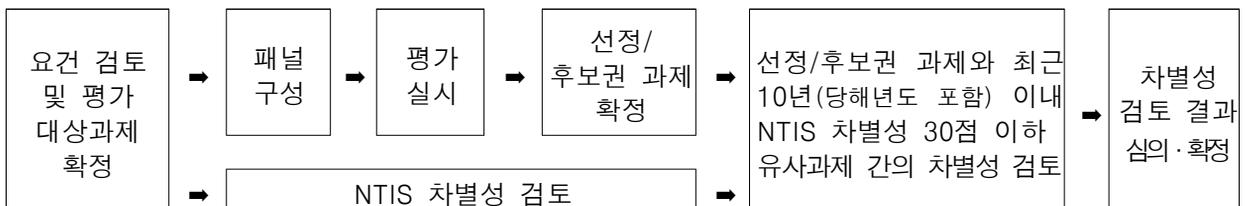
※ 향후 세부 평가계획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음

3 차별성 검토

□ NTIS 차별성 검토

- 선정후보 과제를 대상으로 NTIS 및 (필요시)전문가 활용한 차별성 검토
 - NTIS를 통해 유사과제를 검토하며, 검토결과 같은 주제라도 심화·발전, 다른 방법론 등이 인정되는 과제는 선정·지원

○ 검토절차



□ 연구계획서 간 차별성 검토

- 신규 연구계획서를 대상으로 2026년도 교육부/과기정통부 최초 신규접수된 연구계획서와 차별성 검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유사과제를 검토하며, 검토결과 같은 주제라도 심화·발전, 다른 방법론 등이 인정되는 과제는 선정·지원
- 검토절차 : NTIS 차별성 검토 절차 준용

※ 차별성 검토 방법 및 세부 기준은 향후 AI 적용 여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V 계속 및 종료 등 사업관리

1 계속 및 종료과제

□ 관련규정

- 신청요강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을 따름
- 매년도 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일정, 평가방법 등은 변경 가능

□ 계속과제

- 연차별로 연차보고서*를 연구기간 종료 전 30일 이내 제출
* 연차보고서 : 당해 연도 연구과제의 수행실적 및 차년도 연구과제의 수행계획
- (박사후국내연수) 연구수당 계상 불가

□ 종료과제 : 총 연구기간 종료 시

- 최종평가 없으며 연구종료 후 6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 제출
- 연구수행 기간 및 연구종료 후 5년까지 매년단위로 논문 게재, 특허 등록 등의 성과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운영하는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수시 입력
※ 관련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 연구 수행 중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참여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 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

□ 연수기관/지도교수 변경 : 원칙적으로 변경 불허하나 아래의 경우 예외

- 연수지도교수 신분변동* 등의 경우 주관기관 또는 지도교수 변경 수행 허용
* (퇴직·해임 시) 주관기관 및 지도교수 변경 가능
(지도교수 이직 시) 지도교수 이직 기관으로 주관기관 변경 가능 또는 주관기관 변경없이 동일기관의 타지도교수로 변경 가능

2 협약해약(과제중단) 사항

- **협약해약** : 사업의 지원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협약해약(과제중단)
 - 박사후국내연수사업은 지원자격을 상실하더라도 아래 사항에 따라 잔여 기간 지원 가능
 - 다만, 박사후국내연수사업 3개월 내(‘26.11.30) 중단 시 연수비 전액 반납

신분 변동 및 주관기관 변경에 따른 과제수행 기준

| 구분 | | 조치 내용 | 비고 (연구비 집행 기준) |
|-------------------|-------------------|-------|-----------------------------------|
| 전체 연수 수행 3분의 2 이전 | | 협약 해약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 법령 기준에 따라 반납 |
| 전체 연수 수행 3분의 2 이상 | 연구비 중앙관리가 가능한 기관 | 계속 수행 | - 지도교수 동의 시에 한함 - 잔여 연구비 집행 가능 |
| | 연구비 중앙관리가 불가능한 기관 | 협약 해약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 법령 기준에 따라 반납 |

- ※ 소속기관에서 인건비가 확보된 경우(예시: 전임교원) 인건비 계상 불가
- ※ 소속기관 사정으로 이관이 불가능한 경우 과제중단 가능

□ 과제중단

- 정당한 사유로 인한 연구 수행 포기 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즉시 한국연구재단에 승인을 요청하고 연수(연구)비 잔액 반납
- 아래 기준 이외의 사유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으며, 제재처분 평가단을 통해 연구자 참여제한, 연구비 환수액 등을 심의/확정함

| 구분 | | 세부내용 |
|--------------|---------|--|
| 신분 변동 | 이직·취업 | 타 기관에 채용되어 과제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과제 관리가 불가능한 기관으로의 이직 등으로 인해 과제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 | 퇴직 | 재임용 탈락으로 인해 과제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단, 징계 등의 사유 또는 본인 희망 퇴직으로 인한 경우에는 불인정) |
| | 공직 등 임용 | 국공립·사립대학교 총장, 공공기관의 장(또는 임원) 및 공무원(국회의원, 장(차)관 등 정무직 포함) 등으로 임명되어 연구수행이 제한되는 경우 |
| | 병역 | 전문연구요원 등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과제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 사망, 질병, 육아 등 | | 홍수, 지진 등의 천재지변, 화재, 폭발, 폭동, 소요, 동원령 선포, 전쟁의 위협 또는 존재, 사망, 불구, 폐질, 장기입원, 질병휴직, 출산 및 육아 등에 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과제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 타 사업 선정 | | 현재 과제의 최종 종료 4개월 전 또는 단계 종료 4개월 전에 현재 과제와 연계성이 높은 사업으로 이동하는 경우 |
| 기타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5조에 따른 특별평가를 통하여 수행 포기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 경우 ※ 수행포기의 사유(불가피성) 및 시점(잔여 연구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 ※ 박사후국내연수사업의 경우 연구책임자 변경 불가

3 과제 수행 시 안내 사항

- **연구기간 연장** : 연구책임자가 출산·육아 휴직으로 인해 정해진 기간 내에 과제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연구 기간 최대 2년 연장 허용
- **연구성과 등록 의무** : 논문 실적 등 주요 성과를 온라인으로 등록
 - 연구수행 시 및 연구 종료 후 5년까지 논문 게재, 특허 등록 등의 성과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수시 입력

VI 기타사항

1 논문 사사표기 안내

○ 연구성과의 학술지 논문 게재 시, 해당 논문에 사사를 표기해야 함

- ▶ 국문표기 : 본 연구성과는 0000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No. 과제 번호 : IRIS 시스템에서 확인)
- ▶ 영문표기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Basic Science Research Program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grant number)

2 국내·외 파견연구 및 해외 체류 시 사전 승인

- 박사후국내연수사업 연구책임자는 총 연구기간 중 6개월 이상 국내·외 파견연구 불가
 - 단, 연구책임자가 국내·외 기관에 연구개시일로부터 6개월 미만 파견 시 주관연구기관에서 연구 수행의 필요성에 따라 파견 승인

3 사이버연구윤리교육 이수 의무화

- 연구책임자는 연구 개시 후 3개월 이내 사이버연구윤리교육을 의무 이수해야 함
 - 미이수 시, 최종보고서 제출이 불가하며 이는 협약 위반사항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 조치 가능
 - 교육운영 지정기관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
 - 교육신청 : 알파캠퍼스 학습지원센터(<https://alpha-campus.kr/>)
 - ※ [연구책임자를 위한 연구윤리] 혹은 [참여연구원을 위한 연구윤리] 과정 중에서 직책과 계열에 해당하는 과정을 수강신청

4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의무화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 수행 연구자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함

※ 인간대상연구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

- IRB심의가 필요한 연구 시행 전까지 심의가 완료되어야 함
- 각 소속기관(대학 등)에서 IRB에 관련 사항 확인하고, IRB 심의결과

제출·관리 등은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IRB 포함)에서 담당

※ 전문기관은 필요 시 주관연구기관을 통해 IRB 심의여부 결과(심의결과서 및 심의 면제확인서 등) 관리 현황 등을 제출 받아 확인

- 소속기관 IRB 이용이 곤란할 경우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의 공용 IRB에 확인 (※ 문의처 : 국가생명윤리정책원(02-737-8970))

5 지식재산권(특허 등) 출원·등록 시 연구개발성과 소유권 안내

- 지식재산권(특허 등) 출원·등록 시 성과 소유권 안내
 -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한 국가R&D사업을 통해 지식재산권(특허 등)을 출원·등록하는 경우 지식재산권(특허 등)은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소유로 하여야 함
 - 개인명의 지식재산권(특허 등) 등록에 의한 위반
 - 지식재산권 성과(특허 등)를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의 이름으로 출원 및 등록하는 것은 정부 R&D 관련 규정 위반 행위임
 - 지식재산권(특허 등) 출원·등록 시 연구개발 과제 정보 기재 안내
 -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한 국가 R&D 사업을 통해 국내 지식재산권(특허 등)을 출원/등록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함
- * 과제고유번호, 부처명, 연구관리전문기관, 연구사업명, 연구과제명, 기여율, 주관기관, 연구기간
※ 관련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6 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인체유래물 이용 안내

- 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으로부터 인체유래물*을 분양받아 연구에 이용하려는 연구자는 반드시 담당 부서(인체자원연구지원센터 (1661-9070))에 사전 확인 후 자원 활용이 가능한 과제에 한해 신청하기 바람
- * 인체유래물 : 혈청, 혈장, 소변, 혈액유래 DNA, LCL, LCL유래 DNA 등

7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화합물 기탁 안내

- 연구개발과제로부터 도출된 논문, 특허,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성과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통하기 위하여 장관이 별도로 지정한 기관에 등록하거나 기탁하여야 함
- ※ 화합물의 경우,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에 따라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화합물 은행에 기탁하여야 함

8 연구윤리 확보 및 진실성 검증

- 연구개발기관은 소속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부정행위 검증, 조치를 위한 규정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운영해야 함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1항의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주관기관의 자체 검증시스템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함

<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

-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지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9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시설 및 수입 신고

-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이용하는 연구자는 「유전자 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함
- 시험·연구용 LMO 정보시스템(<https://www.lmosafety.or.kr/mps>) 확인
 - ※ 미신고 시설 운영 및 수입의 경우 벌칙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10 연구실 안전관리 관련 안내 사항

-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관련 규정(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연구실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함
 - *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https://www.labs.go.kr>)에서 관련 자료 참고

11 연구노트 작성 안내

- 관련 규정에 따라 연구자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수행의 시작부터 연구개발성과의 보고·발표 또는 지식재산권의 확보 등에 이르기까지의 연구과정 및 연구개발성과를 기록한 연구노트를 작성하여 관리
 - ※ 관련 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2호)

12 연구 윤리 관련 사항

-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비로 해외 학술대회에 참가 또는 학술지에 논문 게재하는 경우 ‘부실 학회·학술지 체크리스트’를 통한 주관기관 점검 후 추진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이내 친족이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경우*와 연구성과물에 미성년저자를 포함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함. 단,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즉시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함
 - * 단순행정, 실험보조 등은 참여는 불가하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수행의 전문성, 활용 필수성 및 대체불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 주관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성희롱·성폭력 등 성비위 및 갑질로 「교육공무원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소속기관에서 징계가 확정된 경우 즉시 배제하고,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
- 전문기관의 장은 관련 과제에 대하여 특별평가를 실시하고 과제 중단 및 참여제한 등 제재처분 조치
 - ※ 연구수행 전 협약 체결 시, ‘성희롱-성폭력 등 성비위 및 갑질로 인해 징계를 받은 경우, 연구과제를 중단하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근거하여 협약위반에 따른 제재처분을 받게 됨’을 명시

13 적용 법령

- 신청요강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사항에 따라 『학술진흥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등을 적용함

1 신청 및 수행자격

1. 이공학분야(이공계 과학기술 쏠 분야)에는 어떤 학문분야가 해당되나요?

- ➡ 연구자는 신규과제 신청 시 ‘기초연구 평가전문분야(RB분야)’ 를 기준으로 평가 학문분야를 선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구자는 신규과제 신청 전 재단 홈페이지에서 ‘기초연구본부 학문단별 전문위원(Review Board) 분야 분류표’ 를 확인하여 본인의 신청 과제와 가장 적합한 학문분야를 표에서 확인하고, 과제 신청 시 해당 학문분야를 정확하게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분야분류표 확인 방법: 재단 홈페이지(<https://www.nrf.re.kr>) → 사업 안내 → 사업자료실 → 연구분야분류표 → 전문위원(RB)분야분류

2. 인문학(사회학, 체육학 등)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연구자도 이공분야 학문 후속세대지원사업(박사후국내연수) 신규과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 ➡ 박사학위 취득 분야(전공분야)와 관계없이 (연구계획서 상의) 연구 내용 및 주제가 이공학 분야에 해당되면 과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박사학위 취득예정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 ➡ 신청 마감일 기준 박사학위 취득 예정인 자도 신청이 가능하나, 연수(연구)개시일 전에 박사학위 취득이 최종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자는 선정 이후 박사학위 취득이 최종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박사학위증명서’ 를 별도 제출해야 하며, 미취득 또는 미제출자는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가 신규과제 신청 시 국가연구자정보(NRI) 상의 학위 정보를 박사학위 취득상태로 기재 후 취득기관은 취득예정기관으로, 졸업연월은 예정연월로 하면 됩니다.

4. 취업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 취업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선정 이후에는 연수개시일 전까지 원 소속 기관에서의 퇴직 등을 통해 고용관계를 정리하여 연수기관에서의 연수 개시에 제반 문제가 없어야 하는 조건입니다.(휴직 불가)
- ➡ 연구(연수) 수행 전념을 위해 과제 개시 후 타국가연구개발사업은 3책 5공 적용 하에 자율적으로 참여가능하나 이외의 다른 영리활동(창업 등)은 어렵습니다. 다만, 시간강사 활동은 가능합니다.

5. 현재 국내 A대학교의 박사후연구원입니다. A대학교로 박사후국내연수 신규과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 ➔ 신규과제 신청이 가능하나, 연수종료일까지의 소속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주관연구기관(A대학교) 연구비 중앙관리 부서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연수종료일까지의 연수 가능 여부 및 연수비 수혜 가능 여부 등에 대해 사전 확인 바랍니다.

6. 현재 소속이 없거나 미취업 상태이더라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 현재 소속기관이 없거나 미취업 상태이더라도 자격 조건이 만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단, 주관기관과 연수 제반 관리 및 연수예정기관과 연수 가능 여부에 대한 사전 협의가 모두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7. 현재 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로 연구를 수행 중인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또는 현재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 ➔ 현재 연구책임자로서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 또는 학문후속세대 지원사업 연수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이더라도 신규과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현재 수행 중인 사업이 신규과제 연수개시일 전날(2026.8.31.)까지 최종 종료되어야 합니다.

8. 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의 경우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 ➔ 전문연구요원의 복무 기간을 종료하고 연수개시일에 연수를 시작할 수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문연구요원 기간과 연수기간이 중복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9. 2026년 박사후국내연수 신규과제 신청자가 타 개인기초연구사업에 연구책임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까?

- ➔ 신규과제 신청자는 2026년에 신규 공고된 타 개인기초연구사업에 연구책임자로 동시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선정결과가 확정되어 미선정된 경우에는 신청 가능합니다.

2 연수기관(연수지도교수) 및 주관연구기관

1. 박사학위를 취득한 기관(대학)에서의 박사후국내연수 신청이 가능한가요?

- ➔ 박사학위를 취득한 기관(대학)에서의 박사후국내연수도 가능합니다.

2. 사업 신청 전에 연수(연구)기관이 정해져 있어야 하나요?

- ➔ 신청 시 본인이 연수할 기관이 사전에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연수를 수행할 기관의 연구비 중앙관리부서(산학협력단 등)와 연구비 중앙관리 및 4대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신청 전에 확인하고 연수지도교수와 과제 수행에 대해 상의하셔야 합니다.

3. 연수기관이 연구소인 경우, 연수지도교수를 누구로 하여야 하나요?

- ➔ 국·공립 연구소를 연수기관으로 하는 경우, 연구소장 등 연수자의 연수 기간 동안 지도교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를 연수지도교수로 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이 때, 전임/비전임 여부와 관계 없으나 연수종료일까지의 소속과 신분이 보장된 자이어야 합니다.

4. 박사학위를 취득한 대학교에서 박사후국내연수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박사학위 지도교수님을 연수지도교수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 ➔ 박사학위 취득기관에서의 박사후국내연수를 신청하는 경우 박사학위 지도교수님과 연수지도교수를 동일하게 하여 신규과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연수비 관련 사항

1. 신규과제 선정 시 연수비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 ➔ 신규과제 선정자는 연 6천만원의 연수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 신규과제 협약이 완료되면 재단은 주관연구기관에 연수비를 지급합니다. 이후 주관기관은 내부 절차에 따라 연수자에게 연수비(연구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 ➔ 간접비를 제외한 직접비에서 연구수당을 제외한 타 비목(인건비, 연구재료비 등)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 인건비는 45백만원(1년 기준) 이상 계상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타 과제 참여 등으로 인건비 계상을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변경하여 집행 가능합니다.

2. 연구비 계상 및 집행과 관련하여서는 어떤 자료를 참고합니까?

- ➔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및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령」을 준수하여 주시면 됩니다. 기타 세부 계상/집행에 관한 사항은 함께 공지되는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및 주관연구기관에 비치된 『연구비 관리매뉴얼』*을 참고하고 관련 문의는 1차적으로 소속된 주관연구기관, 기타 세부적인 연구비계상/집행기준에 관한 문의는 연구정산총괄팀(042-869-7788)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재단 홈페이지 → 사업안내 → 사업자료실 → 사업관리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및 연구비 사용 관련 자료집

4 과제 수행 시 확인사항

1. 연수지도교수를 참여연구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

- ➔ 박사후내연수사업은 개인이 단독으로 수행하는 사업으로 참여연구자 구성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연수지도교수 및 학생연구원 등을 참여연구자로 구성할 수 없습니다.

2. 박사후국내연수사업 개시 후 3개월 이전에 과제 중단은 불가능 한가요?

- ➔ 박사후국내연수사업은 개시 후 3개월간 의무적으로 연수하셔야 합니다.
 - 만약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취업 및 이직 등의 정당한 사유로 인한 과제 중단 시에도, 연수비는 전액 반납하셔야 합니다. 취업 및 이직 등 정당한 사유없이 과제를 중단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연구과제 수행 중 6개월 이상의 국내·외 파견이 가능합니까?

- ➔ 박사후내연수사업은 총 연구기간 중 6개월 이상의 국내·외 파견연구가 불가합니다. 6개월 이상의 국내·외 파견으로 인한 과제 중단은 수행포기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책임자의 참여제한 및 연구비 환수 등의 조치가 수반될 수 있습니다.

4. 연구수행 중 국내 대학교의 전임 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주관기관을 변경하여 과제를 계속 수행할 수 있나요?

- ➔ 전체 연수 수행 3분의 2 이전에 연수기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과제를 중단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3분의 2 이상 수행 시에는 주관기관을 변경하여 계속 과제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5 과제 접수 시 유의사항

1. 기존에 수행한 과제와 새로 신청하는 과제가 유사해도 되는지요?

지도교수가 수행하는 연구과제와 연수과제는 어떻게 달라야 합니까?

- ➔ 동 사업은 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동일하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신청과제의 차별성을 판단하고 있으니 과제 신청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연구윤리에 관한 내용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참고) 차별성 판단과 함께 연구 윤리 위배가 인정되는 과제에 있어서는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i)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연구목표,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의 동일 또는 거의 유사한 경우, 중복 과제로 판단됩니다.
- ii) 지도교수의 수행 및 신청과제와 연수 신청 과제가 유사할 수는 있으나, 연수자가 독립된 주체로서 연구목표, 방법, 내용을 기술하여야 합니다. (특히, 지도교수 연구계획서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는 것은 표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iii)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의 기 수혜자가 동 사업 내 다른 세부사업으로 신청하는 경우, 기존 과제와 연구목표, 방법, 내용 등에서 차별성이 있어야 별도의 과제로 인정됩니다. (동일한 연구계획서로 재신청하는 경우는 자기 표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제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통하여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와의 차별성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차별성이 없다고 판단된 과제는 선정과제에서 제외되므로 신청자께서는 위의 사항을 유의하시어 연구계획서 작성 시 선행 연구를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접수기간(연구자 신청·주관연구기관 승인)을 놓쳤을 경우 구제 방법은 없습니까?

- ➔ 신청기간과 절차는 모든 연구자와 주관연구기관에게 공통적인 사항인 만큼, 해당 기한 내에 완료되지 않는 경우 **구제방법은 없습니다.** 주관연구기관 미승인 과제에 대해 승인기간 이후에 공문으로 추가 승인을 요청해도 접수되지 않습니다.

3. 첨부파일 제출 전·후에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까?

- ➔ ① 손상된 파일, 암호화된 파일을 업로드 하거나 한글 전용 폰트를 사용하는 경우 PDF변환에 실패할 수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IRIS로 접수 시 업로드 파일 전체 용량이 2GB를 초과하지 않도록 확인하여 주십시오.
- ② 또한 접수 마감 이후 잘못 등록된 파일은 추가 접수 및 교체가 되지 않으므로, 각 첨부파일 항목에 맞게 해당 파일이 제대로 탑재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연구계획서의 PDF 변환 실패 방지를 위한 사전점검 사항

1. 파일명은 특수문자를 넣지 않으며, 자소분리 되어있는지 확인하고 조치한다.
2. 연구계획서는 권장 폰트로 작성한다.(제목-HY헤드라인M, 본문-휴먼명조, 표-맑은고딕)
3. 파일에 DRM을 적용하거나 암호화하지 않는다.
4. 파일을 업로드하기 전에 읽기, 저장, 미리보기, 인쇄가 가능한지 확인한다.
5. 다른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문서를 불러와서 작성하는 경우 UTF-8로 인코딩한다.
6. 한글파일을 배포용 문서로 저장하지 않는다.
7. Word 파일의 경우, 문서 내 표가 손상되었는지 확인한다.
8. 문서에 인쇄제한, 제한된 보기 설정을 하지 않는다.

※ 제출한 첨부파일의 PDF 변환이 실패하는 경우 조치 사항

: 인쇄 - Microsoft Print to PDF로 저장 후 업로드

6 IRIS 관련 사항

1.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과제를 신청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이 있습니까?

- ➔ IRIS는 한국연구재단의 e-R&D와 같은 역할을 하고, IRIS 내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NRI)은 기존의 한국연구자정보(KRI)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각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IRIS 회원가입부터 연구자전환 동의 및 NRI 연구자 정보 등을 미리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IRIS를 통한 과제신청 시 주관연구기관의 대표자가 필수입력 정보이기 때문에 주관연구기관 총괄담당자가 대표자 정보를 사전에 등록해야 합니다. 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첨(매뉴얼)1-1](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및 [별첨(매뉴얼)1-2](IRIS 회원가입(연구자 전환)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국가연구자번호 신규 발급방법이 궁금합니다.

- ➔ 국가연구자번호 신규 발급은 국가연구자번호가 없는 신규 연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국가연구자번호 신규 발급 및 연구자 전환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세부 내용은 [별첨(매뉴얼)1-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회원가입 → ② 연구자정보 전환 → ③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관련 문의처 ☎1877-2041

※ 실명인증 불가 연구자(실명인증이 되지 않는 외국인 또는 해외체류 내국인)는 IRIS 회원가입 불가

※ 기존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와 한국연구자정보(KRI)에서 진행하는 연구자번호 발급·조회·수정 서비스는 2021.8.22.부로 종료

3. 대학의 경우, 주관연구기관을 산학협력단이 아닌 '대학'으로 신청하기를 권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 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일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IRIS 과제 신청 시에도 연구책임자의 NRI 소속기관이 주관연구기관

으로 자동 설정됩니다. '대학'으로 기관정보 등록이 완료되어 있지 않을 경우, 연구책임자가 과제신청을 진행.완료할 수 없으므로 기관총괄담당자는 반드시 과제접수 시작 전에 기관정보 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접수 마감 기간이 임박하여 기관정보를 '대학'으로 변경하기가 어려울 경우 '산학협력단'으로 신청하셔도 무방합니다.

4. 주관연구기관이 대학인 경우, 해당 대학 산학협력단의 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로 등록된 동일인을 대학의 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로도 등록할 수 있습니까?

- ➔ 중복지정이 불가합니다. 한 명의 NRI 소속기관은 다수로 등록할 수 없으며, 등록하고자 하는 주관연구기관과 NRI 소속기관이 동일한 인력만 해당 기관의 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대학과 산학협력단의 기관정보를 각각 등록하기 위해서는 2명의 대표자(예: A대학 홍OO, A대학산학협력단 김OO)와 2명의 기관총괄담당자(예: A대학 이OO, A대학산학협력단 박OO)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기관총괄담당자가 아닌 기관담당자는 여러 명을 지정할 수 있으며, 소속 기관 정보가 일치하는 담당자에게만 기관담당자 역할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승인권한 부분은 다음 FAQ 참고

5. 주관연구기관을 대학으로 선택하여 과제를 신청하더라도, 과제 접수 및 협약 등 절차를 진행할 때 NRI 소속기관이 해당 대학 산학협력단인 직원이 과제관리 (검토·승인 등)를 수행할 수 있습니까?

- ➔ 네. 그렇습니다. NRI 소속기관 정보가 'A대학'이 아닌 'A대학 산학협력단'으로 등록된 인력은 'A대학 산학협력단'의 기관담당자 권한만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IRIS에서 별도 조치를 해 두었기 때문에 'A대학 산학협력단' 기관담당자는 'A대학 산학협력단' 뿐만 아니라 'A대학'의 과제까지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단, 반대로 'A대학' 기관담당자에게는 주관연구기관을 'A대학'으로 신청한 과제의 접수 및 협약 등에 필요한 기관 승인 권한만 부여되며, 'A대학 산학협력단' 과제에 대해서는 승인 권한이 없습니다.

6. 사업 관련 문의는 한국연구재단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중 어디로 해야 합니까?

- ➔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은 한국연구재단이므로, 사업 및 평가 관련 문의는 한국연구재단 담당부서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다만, IRIS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스템 관련 문의는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게시판(R&D업무포털 > R&D고객센터 > R&D신문고 > IRIS시스템문의)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